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29
----------	------

제출연월일: 2022. 3. 24.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보훈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지원대상(안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18 (제243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라. 지원신청,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지급 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국가보훈기본법」
- 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예산계 협의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7883호, 2022. 2. 22.)
- 라. 입법예고: 2022. 2. 14. ~ 3. 7.(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을 말한다.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제4조(지원 금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에 한함.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호국정신을 계승하거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울산보훈지청장에게 부적격 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25일 까지 지정한 계좌로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망위로금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

야 한다.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 규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 12. 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

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 3. 28.]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15,600천원으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보훈명예수당	13명×100,000원×12월 = 15,600,000원	15,600,000원	

3. 작성자

- 소 속: 복지지원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신 동학
- 연락처: (052)290-3561